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제1230호 2022. 6. 17.(금)

선람	기 관 의 장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8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8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88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 8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682호 양식업 면허 처분 공고 ---------- 9

○ 삼척시 공고 제684호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10

○ 삼척시 공고 제689호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 삼척시 공고 제689호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 삼척시 공고 제68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28

○ 삼척시 공고 제689호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 삼척시 공고 제692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 42

공람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 -8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14.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233-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669	20220614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233-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669	20220614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1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233-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669	20220614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고시 제2022 -8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17.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209-139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679	강원도삼척시하장면백두대간로3209-139	20220617	가설건축물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37-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오리1길 50	20220617	가설건축물	20090626	일련번호방식 명칭사용 (교가오리길분기)
		이	하	여	백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2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679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209-139	20220617	가설건축물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37-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오리1길 50	20220617	가설건축물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칭사용(교가오리길분기)	

삼척시 고시 제2022-88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삼척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17.

삼 척 시 장

○ 고시내용

- 소형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 6,000원/개

- 대형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 15,000원/개

○ 대 상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 기 설치된 건물번호판의 훼손·망실로 인해 재교부하는 경우

○ 적용시기 : 2022. 6. 17. 부터

○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 건물번호 부여 절차

건물번호 부여 및 재교부신청	⇨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교부	⇨	건물번호판 부착
건물신축, 망실, 훼손 시 건물 소유자 신청		삼척시청 민원과		건축물 소유자·점유자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1조제4항에 의거 대로·로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 설치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033-570-394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2 - 682호

양식업 면허 처분 공고

2021~2022년 삼척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삼 척 시 장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어업의 명 칭 (양식방법)	면허번호	면허기간	어장의 위 치 (면 적)	어업권자 (주 소)	처분일자	비 고
복 합 양식업 (가두리식)	삼척시 복합양식업 제2022-1호	2022.06.12. ~ 2032.06.11.	궁촌리 지선 (5ha)	김 (삼척시 근덕면)	2022.06.10.	재개발 (삼척시 복합양식 제2010-1호)

삼척시 공고 제2022-684호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도로 하장102호(판문리) 선형개선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13.

삼 척 시 장

1. 사업의 개요

○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하장면	면도	판문	하장 102호	하장면 판문리 산35-1	하장면 판문리 산33-7	0.98	판문리	8.0 ~ 14.0	8.0 ~ 14.0	차로 선형개선

○ 사 업 량 : L=980m, 선형개선 3구간
○ 사업기간(예정) : 고시일 ~ 2023. 12.
○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삼척시청 / 삼척시 중앙로 296

2.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 업 명	열람 장소	열람 시간	열람 기간
농어촌도로 하장102호 (판문리) 도로확포장공사	삼척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 (033-570-3489)	09:00 ~ 18:00	2022. 6. 13. ~ 2022. 6. 28. (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6. 13. ~ 2022. 6. 28.(15일간)
○ 제출방법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삼척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로 제출

※ 토지세목조서의 편입면적은 도면에서 구적된 면적으로 추후 지적공사 분할측량 후 면적 증감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033-570-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용지 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1	하장면 판문리	산10-5	도	331	255		삼척시
2	〃	산10-4	도	718	185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판문길 7**	김*덕
3	〃	산9-4	도	2,732	915		삼척시
4	〃	산10-1	도	302	14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판문길 7**	김* 덕
5	〃	산7-7	임	196	14	태백시 황지동 2*4-*4	채* 식
6	〃	산7-6	도	393	305	태백시 황지동 2*4-*4	채* 식
7	〃	산9-1	도	919	4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판문길 7**	김* 덕
8	〃	산9-6	도	138	129		삼척시
9	〃	산8	임	1,587	726	장성읍 금천리 산**	최* 집
10	〃	산7-10	도	749	251		삼척시
11	〃	산7-4	도	687	176	태백시 황지동 2*4-*4	채* 식
12	〃	산7	임	26,245	4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 20*동1**1호(소라파크)	권* 길
13	〃	산7-9	도	3,896	2,134		삼척시
14	〃	산22-4	도	641	348		삼척시
15	〃	산7-2	도	1,473	299	태백시 황지동 2*4-*4	채* 식
16	〃	산22-1	도	1,159	765		삼척시
17	〃	산22-3	도	156	76		삼척시
18	〃	산7-8	도	322	129		삼척시
19	〃	산21-5	도	1,621	577		삼척시
20	〃	산23-4	도	2,620	407		삼척시
21	〃	산23-1	임	12,235	44	하장면 판문리 *	이* 철
22	〃	산19-12	도	304	242		삼척시
23	〃	산19	임	42,695	9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판문길 *	이* 학
24	〃	산19-3	도	1,282	69	정선군 북면 고양리 ***	김* 대
25		산19-9	도	1,737	1,053		삼척시
26		산19-11	도	784	386		삼척시
27		산19-1	도	595	48	건설부	국
28		산19-10	도	379	106		삼척시
29		산17-1	도	1,984	180	건설부	국
30		산19-6	도	1,508	1,126		삼척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31	하장면 판문리	산7-1	도	3,769	148	건설부	국
32	〃	산20-1	도	388	192	삼척읍 성북리 **	김* 화
33	〃	산26-3	도	3,307	306		삼척시
34	〃	산21-1	도	893	362		삼척시
35	〃	산25-1	도	144	103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8 대우효령아파트 10*-7**	김* 홍
36	〃	산20-2	도	2,010	1,301	삼척읍 성북리 **	김* 화
37	〃	산21-4	도	1,122	154		삼척시
38	〃	산20	임	19,817	2	삼척읍 성북리 **	김* 화
39	〃	산24-1	도	300	53	태백시 황지동 2**-*	서* 남
40	〃	산23-3	도	6,631	1,466		삼척시
41	〃	산23-7	도	3,450	1,222		삼척시
42	〃	산24-2	도	2,036	1,079		삼척시
43	〃	산24	임	39,317	14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 ***호(괴안동,현대홈맨션)	김* 수
44	〃	산23-6	도	1,716	1,362		삼척시
45	〃	산23-5	도	200	21		삼척시
46	〃	산23-2	임	9,909	78	하장면 판문리 *	이* 철
소 계		46필지		205,397	19,182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서

사 업 명	농어촌도로 하장102호(판문리) 선형개선공사	
사업장 위치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 산25-1 ~ 판문리 산23-7	
의견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의견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청 귀하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6.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삼척시장직의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2조 ~ 안 제3조)
다. 회의(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수당 및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안 제7조 ~ 안 제8조)
바. 운영세칙(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입법예고(2022. 4. 8. ~ 4. 29.) 결과 :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수위원회 사무실 비품 등 운영비 및 회의참석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한시적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총 2억원 미만의 운영비가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우종원
연락처	(033) 570 - 3206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6.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로 보육정책·사업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적정심의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원아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안 제5조)
- (현행) 위원의 수 15명 (변경) 위원의 수 20명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 추가

나. 비용의 보조지원에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 항목 신설(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입법예고(2022. 4. 8. ~ 4. 28.) 결과 : 의견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붙임 3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붙임 4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한다.

제7조 중 “제7조”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제7조제2항----------.
제2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5. 9. 15.>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2012. 2. 3., 2012. 6. 29., 2013. 12. 4.>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

○ 수혜자 예상인원(연간)

- 특성화비 : 영아(만1세~만2세) 480명
- 특별활동비 : 유아(만3세~만5세) 320명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2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영유아 현황(2021. 12월 기준) : 1,010명

- 지원인원 : 800명
- 제외인원 : 210명(만0세 영아 108명 및 시청자녀 등 102명)

○ 특성화비 및 특별활동비 : 307,200천원

- 특성화비 20,000원 × 480명 × 12월 = 115,200천원
- 특별활동비 50,000원 × 320명 × 12월 = 192,000천원

나. 추계 결과

○ 특성화비 및 특별활동비 계속 지원 : 연간 307,200천원

○ 연도별 추계 (대상자)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계	307,200	307,200	307,200	307,200	307,200	1,536,000
특성화비	115,200	115,200	115,200	115,200	115,200	576,000
특별활동비	192,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960,00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307.200	307.200	307.200	307.200	307.200	1,536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3. 작성자

작성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심혜영
연락처	(033) 570 - 3310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강원삼척014			
정 책 명	삼척시 영유아보육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삼척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진은경	전화번호	033-570-385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4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보육정책 등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어린이집 원아의 특성화,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삼척시 영유아보육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3-3-1. (성별균형참여) 점검포인트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 기재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삼척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양하영/033-570-3342)

복지정책과장 귀하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2. 6. .
제 출 자: 삼 척 시 장

☐ 추진배경

○ 체육 및 레저활동에 대한 변화된 수요와 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삼척시 체육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공원을 확보하여 지역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공간을 제공

○ 인접한 수로부인헌화공원(문화공원)과 임원항, 임원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 제28조제6항(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시설)

☐ 추진경위

○ 2021. 5. 6. : 삼척 루지조성사업 제안: 삼척루지㈜
○ 2021. 10. 22. : 삼척 루지조성사업 삼척시의회 동의
○ 2021. 11. 9. : 삼척 루지조성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 2021. 11. 29.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관광과 → 도시과
○ 2022. 1. 14. ~ 1. 28. : 주민 의견 청취
○ 2022. 1월 ~ 2월 :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조서 【도지사 결정 사항】

○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삼척 루지공원	체육 공원	원덕읍 임원리 2번지 일원	-	증) 99,117	99,117	-	자연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삼척 루지공원	• 체육공원 신설 - 위치: 원덕읍 임원리 2번지 일원 - 면적: 99,117㎡	• 레저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민, 이용객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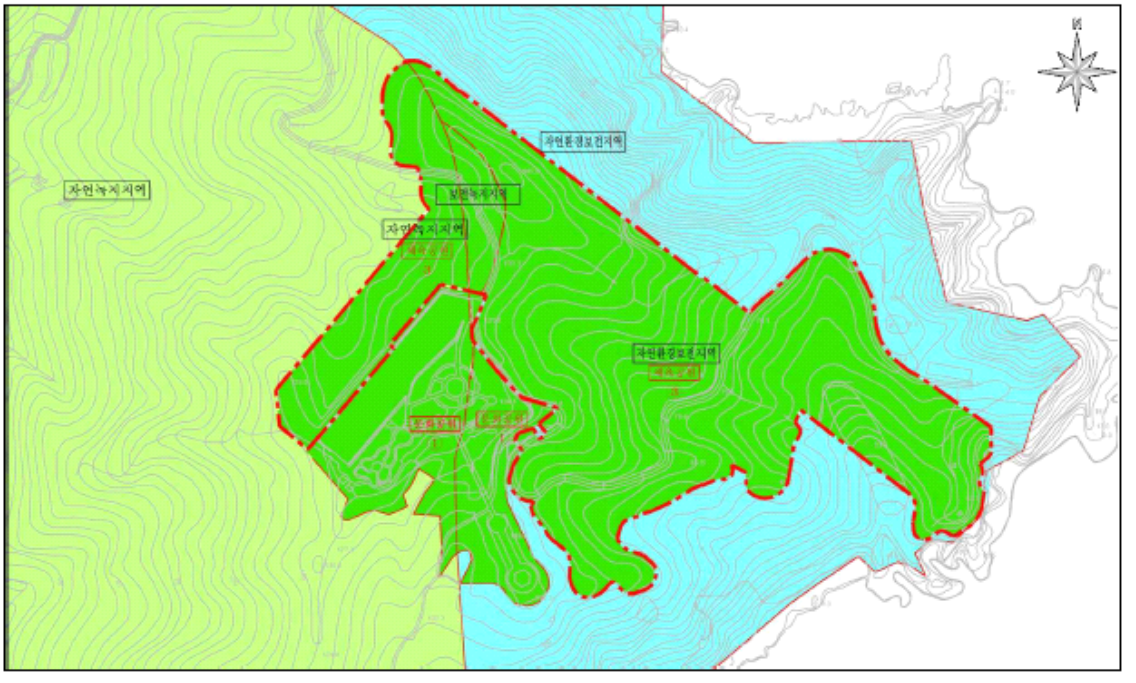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시장 결정 사항】

세부시설			면적 (㎡)	건축물		비고
구분	명칭	번호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원면적			99,117	-	-	
- 시설부지 합계			47,667	2,280	5,413	시설율 48.09%
도로	소계		4,049	-	-	
	도로		4,049	-	-	
운동시설	소계		30,207	-	-	운동시설율 63.37%
	루지트랙	가	29,509	-	-	
	배드민턴장	나	424	-	-	
	체력단련장	다	274	-	-	
	리프트	①	-	-	-	공작물 1기
편익시설	소계		4,854	2,280	5,413	
	루지센터	라	4,854	2,280	5,413	
관리시설	소계		8,557	-	-	
	주차장	마	8,381	-	-	
	오수처리장	바	176	-	-	
- 녹지 및 기타			51,450	-	-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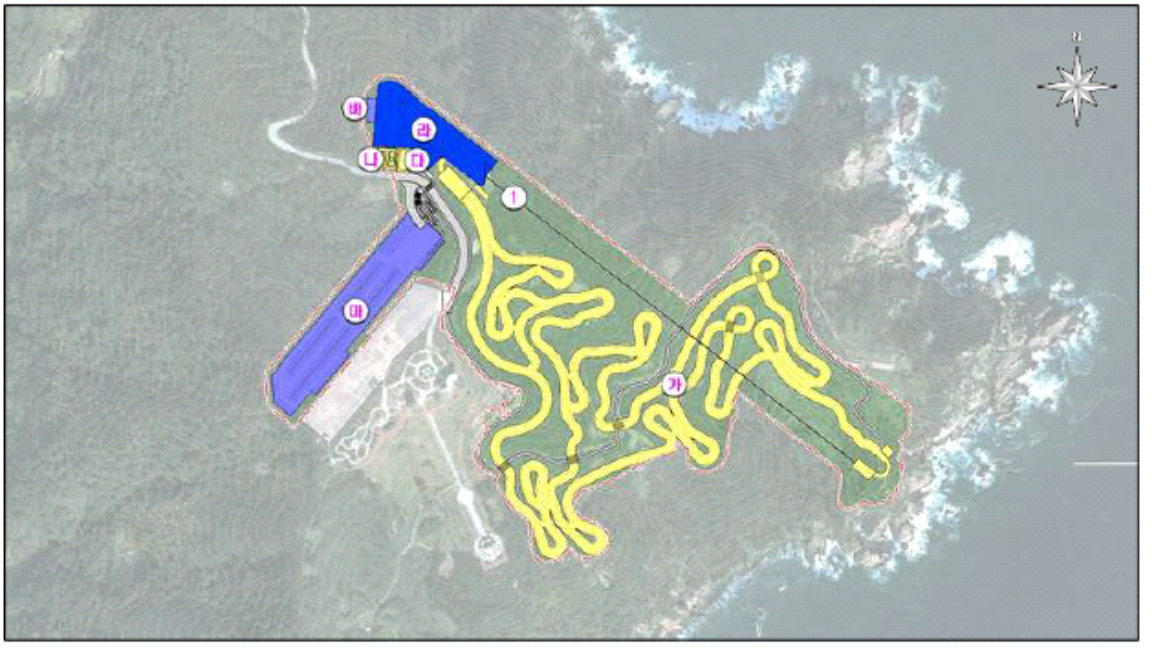

☐ 향후 추진계획

○ 2022. 7월 :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2022. 8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삼척시 → 강원도)

○ 2022. 9월 ~ 11월 :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

○ 2022. 12월 :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 끝.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6.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 금연지도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원 권고사항인 금연지도원 공개모집 내용 신설(안 제2조제1항)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별지 제1, 2, 6, 7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입법예고(2022. 3. 10. ~ 3. 30.) 결과 : 의견없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삼척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신 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삼척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생 략)	②---------- 1.·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③ (생 략)	④ (종전의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종전의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1. ~ 3. (생 략)	⑥ (종전의 제5항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삼척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전문희
연락처	(033) 570 - 4630

삼척시 공고 제2022-692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삼 척 시 장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하장면	농도	거무소선	하장302호	하장면 번천리 산57-8	하장면 번천리 216-13	0.86	번천리	6.5	6.5	차로 폭 확장공사

1. 사업의 명칭 : 농어촌도로 하장302호(번천리)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 시행자 : 삼척시장

3. 사업시행기간 : 2022. 06. ~ 2022.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설과

5. 노선지정도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1	하장면 번천리	216	하천	279,376	2,160		국(건설부)
2	〃	216-12	하천	3,780	601		국(기획재정부)
3	〃	216-13	하천	3,187	1,527		국(건설부)
4	〃	7-8	전	7,130	69	삼척시 동해대로 4122-20, 가동 ***호(강부3차 A)	한*식
5	〃	7-13	도로	11	11		삼척시
6	〃	7-1	대지	509	22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1	한*수
7	〃	7-10	도로	39	39		삼척시
8	〃	7-14	도로	40	40		삼척시
9	〃	216-11	하천	594	502		국(건설부)
10	〃	7-7	전	5,023	291	동해시 지흥동 3**	김*영
11	〃	8-1	도로	453	127		국(건설부)
12	〃	7-12	도로	83	77		삼척시
13	〃	7-2	전	755	253	동해시 지흥동 3**	김*영
14	〃	7-11	도로	237	227		삼척시
15	〃	산20	임야	19,059	15	동해시 지흥동 3**	김*영
16	〃	7-16	도로	1,177	211		국(기획재정부)
17	〃	산20-1	도로	776	586		삼척시
18	〃	49-1	도로	432	297		삼척시
19	〃	55-5	도로	761	366		국(기획재정부)
20	〃	55-4	임야	903	581		국(기획재정부)
21	〃	54-1	전	100	10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6**	이*권
22	〃	54-2	도로	279	128		삼척시
23	〃	215	도로	460	60		국(건설부)
24	〃	산57-8	도로	2089	136		국(국토해양부)
소 계		24필지		327,253	8,426		